## 증권거래세법 시행령



[시행 2023. 1. 1.] [대통령령 제33209호, 2022. 12. 31., 일부개정]

기획재정부 (금융세제과) 044-215-4231

- **제1조(외국의 유가증권시장)** 「증권거래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을 말한다. <개정 2005. 2. 19., 2008. 2. 29., 2009. 2. 3., 2020. 2. 11.>
  - 1. 뉴욕증권거래소
  - 2. 전미증권업협회중개시장
  - 3. 기타 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장

[전문개정 2000. 12. 29.]

- 제1조의2(납세의무자) ①법 제3조제1호 나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"이란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78조 또는 제17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주권을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2000. 12. 29., 2005. 2. 19., 2008. 2. 22., 2009. 2. 3., 2013. 8. 27.>
  -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"금융투자업자"란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 개업자를 말한다.<개정 2009. 2. 3.>
  - ③법 제3조제2호에서 "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"란 금융투자업자가 주권 또는 지분(이하 "주권등"이라 한다)의 매매·위탁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.<개정 2009. 2. 3.>

[제1조에서 이동<1993 • 12 • 31>]

- 제1조의3(본점일괄납부) ① 법 제4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"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그 납세의무자의 지점・영업소 또는
  - 그 밖의 사업장(이하 "지점등"이라 한다)의 증권거래세액의 납세지로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 수리된 경우를 말한다.
  - ② 법 제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해당 납세의무자의 지점등의 증권거래세액을 납부(이하 "본점일괄납부"라 한다)하려는 자는 본점일괄납부하려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본점일괄납부 신고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(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)하여야 한다.
  - 1.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
  - 2. 지점등의 현황
  - 3.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
  - 4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13조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서
  - 5. 지방세 완납증명서
  - ③ 본점일괄납부하는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, 변경 사유 등을 적은 본점일괄납부 변경신고서를 제출(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)하여야 한다.
  - 1.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변경
  - 2. 지점등의 신설ㆍ폐지
  - ④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본점일괄납부를 신고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점일괄납부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
  - 1. 본점일괄납부를 신고한 자가 신고일부터 과거 2년 이내에 「조세범처벌법」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
  - 2. 본점일괄납부를 신고한 자가 신고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
  - 3. 그 밖에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본점일괄납부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
  - ⑤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본점일괄납부 신고를 수리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본점일괄납부를 신고한 달의 말일까지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.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⑥ 본점일괄납부를 하는 납세의무자가 본점일괄납부를 포기하고 각 지점등에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려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본점일괄납부 포기신고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(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)하여야 한다.
- 1.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
- 2. 본점일괄납부 포기 사유

[전문개정 2013. 2. 15.]

- 제1조의4(납세지의 판정기준) ①법 제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소 또는 거소는 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2조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. <개정 2005. 2. 19.>
  - 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결정은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5조 또는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8조의 규정에 의한다.<개정 1995. 12. 30., 1998. 12. 31., 2005. 2. 19.>

[본조신설 1993. 12. 31.]

[제1조의3에서 이동<2000. 12. 29.>]

- **제2조(양도의 시기)** 주권등의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매매거래의 확정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 <개정 2000. 12. 29., 2005. 2. 19., 2008. 2. 22., 2009. 2. 3., 2013. 8. 27.>
  - 1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(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)된 주권에 대하여는 그 양도가액이 결제되는 때
  - 2. 제1호에 따른 주권 외의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가 매매·위탁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
  - 3.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. 다만, 그 주권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로 한다.
- 제3조(비과세양도) 법 제6조제3호에 따라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. [전문개정 2020. 2. 11.]
- **제4조(양도가액평가방법)**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1)에 따른 시가액 또는 같은 목 2)에 따른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. <개정 2008. 2. 22., 2020. 2. 11., 2021. 2. 17.>
  - 1. 시가액 : 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167조, 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89조 또는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제26조에 따라 시가로 인정된 해당 주권등의 가액
  - 2. 정상가격 : 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183조의2, 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131조 또는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상가격으로 인정된 해당 주권등의 가액
  - ②법 제7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"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에 양도된 주권등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.<개정 2005. 2. 19., 2008. 2. 22., 2009. 2. 3., 2013. 8. 27., 2022. 2. 15.>
  - 1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상장법인의 주권등을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: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
  - 2. 삭제 < 2009. 2. 3.>
  - 3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283조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(이하 "금융투자협회"라 한다)가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거래되는 종목으로 지정한 주권등을 같은 항에 따른 기준 외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: 금융투자협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
  - 4. 제1호 및 제3호 외의 방식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: 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150조의22에 따라 계산한 가액 [전문개정 2000. 12. 29.]
- **제5조(탄력세율)** 법 제8조제2항을 적용받는 주권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3. 8. 27., 2017. 2. 7., 2019. 5. 28., 2020. 12. 29., 2022. 12. 31.>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- 1. 유가증권시장(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)에서 양도되는 주권: 영(零). 다만,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8로 하고,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5로 하며,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3으로한다.
- 2. 코넥스시장(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)에서 양도 되는 주권: 1만분의 10
- 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의 경우: 1만분의 15. 다만,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23으로 하고,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20으로 하며,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18로 한다.
  - 가. 코스닥시장(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)에서 양도되는 주권
  - 나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7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

[전문개정 2013. 6. 28.]

제6조(거래징수) 법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가 법 제9조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법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6조의2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비과세양도명세서를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분에 대해서만 증권거래세를 징수하지 않는다. <개정 2022. 2. 15.>

[전문개정 2009. 2. 3.]

- 제6조의2(주권매매 관련 사항의 통지) 법 제9조제2항에서 "양도 건별 주권의 종목 명, 수량, 1주 당 가액, 매매금액, 매매연월일, 양도자의 계좌번호 및 투자자를 분류할 수 있는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  - 1. 양도 건별 주권의 종목명, 수량, 1주당 가액, 매매금액, 매매연월일과 양도자의 계좌번호
  - 2.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정거래소가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393조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를 분류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사항

[전문개정 2022. 2. 15.]

- 제6조의3(증권계좌간 이체내역 등 제출)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9조의2에 따라 그가 관리하는 증권계좌를 통하여 법 제 3조제3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가 주권등을 양도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권등의 거래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2. 12.>
  - 1. 제출자의 인적사항
  - 2. 거래자의 인적사항
  - 3. 거래 연월일
  - 4. 거래대상 주권등 종목명
  - 5. 거래 수량
  - 6. 증권거래세 신고·납부세액

[본조신설 2013. 2. 15.]

- 제7조(신고 · 납부 및 환급)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1993. 12. 31., 1996. 8. 22.>
  - 1.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
  - 2. 세율별 과세표준·세율·세액
  - 3. 거래자의 인적사항(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한한다)

- 4. 주권등 매매계약서 사본(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한한다)
- 5. 비과세양도명세서(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한한다)
- 6. 기타 참고사항
-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세의 납부에 있어서는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「국세징수법」에 의한 납부서에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(그 대리점을 포함한다)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.<개정 1996. 8. 22., 2005. 2. 19.>
- ③납세의무자가 사업장을 폐지한 때에는 그날부터 25일 이내에 폐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.<개정 2009. 2. 3.>
- ④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증권거래세 신고·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월 이내에 한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을 할 수 있다.<신설 2000. 12. 29.>

[제목개정 2000. 12. 29.]

**제8조(경정)** ①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"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00, 12, 29.>

- 1.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
- 2. 장부 기타의 증빙서류의 내용이 주권 등의 거래량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
- ②법 제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주권 등의 거래량에 제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주권 등의 단위당 금액을 곱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다.<개정 1993. 12. 31., 2000. 12. 29.>

[제목개정 2000. 12. 29.]

제8조의2 삭제 <2007. 2. 28.>

**제9조(장부의 비치・기장)** 법 제1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관계 장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. <개정 2009. 2. 3., 2022. 2. 15.>

- 1. 과세 및 비과세양도의 구분
- 2. 제6조의2 각 호의 사항 및 세액
- 3. 삭제 < 2009. 2. 3.>
- 4. 기타 참고 사항
- 제10조(명령사항) 국세청장·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납세의무자 및 금융투자업자에 게 전자계산조직의 사용방법, 과세 및 비과세양도의 구분표시, 주권등의 매매거래(법 제9조의2에 해당하는 양도를 포함한다)상황보고, 그 밖에 납세보전상 필요한 한도내에서 단속상 필요한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. <개정 1996. 8. 22, 2013. 2. 15.>
- 제11조(질문·검사) 증권거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여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.
- **제12조(서식)**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기타 필요한 서식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1994. 12. 23., 2000. 12. 29., 2008. 2. 29.>

제13조 삭제 <2000. 12. 29.>

부칙 <제33209호,2022. 12. 31.>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

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